입법 동향 알림

vol.3 농협은행 규제대응지원반

▶ 「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」개정('22.3.3. 시행)

1. 해외직접투자시 신고·보고의무 완화 (제7조 제1항 및 제4항)

개정 전	개정 후
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시 투자금액 불문하고 사전에 신고 의무	투자금이 미화 2,000만불 이내 인 경우 (투자금 지급 날로부터 1개월 이내) 사후보고
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시 최초 신고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보고 의무	투자금 변동없는 지분율 변동 의 경우 보고의무 면제

○ 관련 부서 : **투자금융부**

※「역외금융회사」란?

☞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준거 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

2.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에 대한 신고의무 완화(제12조 제2항)

개정 전	개정 후
해외지점의 아래 영업활동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 후 수리 를 받아야 함 ✓ 부동산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✓ 증권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 ✓ 비거주자에 대한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	거래 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

○ 관련 부서 : **투자금융부**